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 「민법」 개정 후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

2. 주요내용

-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외 2건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조례 정비
 - 정신이상자 → 정신질환자
 - 장애자 → 장애인
-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용 용어 정비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민법」
-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정신 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한다.

제2조(「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한다.

제3조(「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실명란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한다.

제4조(「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또는 <u>정신 이상자</u> 2. ~ 4. (생략)	제9조(관람의 제한) ----- ----- -----. 1. ----- <u>정신질환자</u> 2. ~ 4. (현행과 같음)

□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입관의 거부)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정신이상자</u>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u>정신질환자</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미성년자, <u>금치산자</u> , <u>한정치산자</u>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u>피성년후견인</u> , <u>피한정후견인</u> ----- ----- 3.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

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김 용 학
	담 당	김 종 연
	담 당 자	손 창 호 (480-6522)